

무배당
KB홈엔비즈케어
종합보험
(16.01)

 KB 손해보험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 금융그룹

예측할 수 없는 화재사고
KB홈엔비즈케어종합보험으로
튼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천 번을 잘 관리해도 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화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동안 화재사고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 출처 : 국민안전처, 2014년

화재발생건수
42,134건

인명피해
2,181명

재산손해
4,053억원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손해가 발생할까요?



건물재산손해



복구비용



휴업손해



신체상해



피해자 배상책임



실화시 벌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아십니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목욕장, 단란주점, 유흥업소,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화상대화방 및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화재배상책임보험 충족기준

구분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2천만원)~14급(80만원)]
	후유장해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원)~14급(630만원)]
대물		1사고당 1억원

상품
특징



한번의 화재사고로

재산 · 비용 · 배상책임손해, 신체상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

**무배당 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으로
든든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장과 주택을 하나로 통합관리!

보험의 목적물 추가 특별약관을 통해 사업장 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동시 가입 가능



사업장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보장설계!

음식물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 주유소배상책임, 이미용사(시설소유(관리)위험포함) 배상책임 등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설계



주택화재 보장 UpGrade!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보장 신설로 주택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보장 강화



소송사건 진행시 부담하는 법률비용 보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진행시 부담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인지액, 송달료 보상

※ 상품특징은 해당 특약 가입시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가입 안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3년,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선택계약의 경우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이 다르므로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 소개



기본계약

- 화재손해
- 화재배상책임

선택계약

재물 손해	• 풍수재손해 • 구내폭발파열 위험 • 붕괴, 침강및사태로인한 재산손해 • 구내냉동(냉장)위험 • 도난손해 • 전기위험 • 항공기차량손해 • 위조지폐손해 • 유리손해	• 점포휴업손해 • 야외간판풍수재손해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 골프용품손해
배상 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 음식물 배상책임 • 가스사고 배상책임 • 의약품등 배상책임 • 약국시설 배상책임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주유소 배상책임 • 주차장 배상책임 •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II • 임차자 배상책임(화재) • 신체손해 배상책임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II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II (화재배상제외)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 임대인배상책임 • 임대인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 이미용사(시설소유(관리)위험포함) 배상책임
비용 보장	• 홀인원비용손해 • 보이스피싱손해(피해환급금 제외)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 자동차사고별금 • 운전면허정지보장 • 운전면허취소보장 • 교통사고처리보장 •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 화재별금
상해 보장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일반상해후유장해(3~79%)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 팔뚝손가락후유장해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일반음식점 플랜

가입기준 : 5년만기 전기납, 월납, 일반음식점, 건물급수 1급, 165㎡, 지상, 도시가스, 연매출 1억원

담보명			지급금액	월납보험료
기본계약	화재손해[실손보상형]	건물	1억원 한도	7,300원
		집기	2,000만원 한도	1,460원
		시설	5,000만원 한도	3,650원
	화재배상책임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대인] 사 망 : 1인당 1억원 한도 부 상 : 1인당 2,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1인당 1억원 한도	1,056원

선택 계약	재물 손해	건물복구지원비용(화재)	1,000만원 한도	220원
		구내폭발파열위험[실손보상형]	1억원 한도	4,100원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보상형]	1억원 한도	1,300원
		점포휴업손해	2,000만원한도	4,300원
	배상 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대인] 사 망 : 1인당 8,000만원 한도 부 상 : 1인당 1,5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1인당 8,000만원 한도	599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1인당 5,000만원 한도, 1사고당 5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2,789원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000만원 한도, 1사고당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1,862원
	비용 손해	화재벌금	2,000만원 한도	2원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2,000만원 한도	4,872원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2,000만원 한도	490원

월납보험료 및 예상 만기환급금 예시

구분	월납보험료	예상 만기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일반음식점플랜	200,000원	8,862,000원(73.9%)	9,300,000원(77.5%)	9,300,000원(77.5%)

경과기간별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일반음식점플랜, 5년만기 전기납, 월납보험료 200,000원, (단위:원)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납입보험료		2,4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12,000,000
예상 해지 환급금	최저보증이율	1,117,000	3,026,000	4,954,000	6,899,000	8,862,000
	평균공시이율	1,135,000	3,096,000	5,109,000	7,177,000	9,300,000
	공시이율	1,135,000	3,096,000	5,109,000	7,177,000	9,300,000

주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16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3.5%, '보장성-1601 공시이율' 2.9% 가정)

주3)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6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4) '보장성-16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 적용합니다.

주5) '보장성-16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보장 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	*실손보상형 : 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손보상형 :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실손전부보상 *비례보상형 :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비례보상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는 가입금액 한도)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 사망 : 1인당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주요 선택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풍수재손해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 (특수건물) 풍수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비특수건물)	*실손보상형 : 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비특수건물의 경우 물건가액의 2%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구내폭발파열위험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 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	*실손보상형 : 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재산 손해를 보상	*실손보상형 : 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구내냉동(냉장)위험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점포휴업손해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화재 · 폭발 · 파열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영업을 저해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	점포휴업손해 : 가입금액 × 휴업일수 비율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 가입금액 ×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도난손해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훼손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전기위험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만원 공제)
항공기차량손해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손해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유리손해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냉해, 파열 등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 손해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2만원 공제)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가입금액 한도
야외간판풍수재손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와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0만원 공제)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에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임대료 손실 보험금(90일 한도)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부터 1일당 지급)	1일당 10만원 한도 실손보상(90일 한도)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보험의 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위조지폐손해	피보험자가 및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관련 업무를 포함) 구내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생긴 실손 손해액	가입금액 한도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화재배상제외)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단,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화재배상제외)의 경우,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는 제외)	가입금액 한도 (단, 대물사고 20만원 공제)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임대인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단, 임대인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의 경우,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는 제외)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대물 1사고당 20만원)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보장 내용



주요 선택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단,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의 경우,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는 제외)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음식물배상책임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가스사고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의약품등배상책임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따라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약국시설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학교경영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대인/대물 각 10만원공제)
주유소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 및 그 주유소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주차장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단,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Ⅱ의 경우, 차량정비업무에 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이미용사 (시설소유(관리)위험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을 포함합니다. 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3~79%)	일반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률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Ⅱ	일반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화재벌금	대한민국내에서 형법 제170조(살해)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살해,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역 + 송달료: 500만원한도
(가족)과실치사상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000만원 한도
보이스피싱손해 (피해환급금 제외)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실제금전손해액의 70%)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가입시 꼭 알아두실 사항

알아두실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재물보험)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재물보험)

피보험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 및 폭발파열사고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 화재로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 지진, 분화 또는 전염,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쬔 것,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등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에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재물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재물보험)

- 계약에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무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 이하 5천만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재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고소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보험상당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당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고객콜센터
(계약/사고 접수/보상)

1544-0114

- 사고접수 및 매직카 긴급출동 서비스 : 24시간
- 보험계약대출상담 : 오전 9시 ~ 오후 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기타 상담 : 오전 9시 ~ 오후 6시(토, 일, 공휴일 제외)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역삼동, KB손해보험빌딩)



KB 손해보험